

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2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안이유

물가대책위원회를 실질적이고 실무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책위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,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부지사에서 공업경제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직제 개편에 의한 국·과의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,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지사에서 공업경제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부위원장 제도는 폐지함
- 직제 개편에 의한 국·과의 명칭을 변경

의안전문 : 별첨

근거법령

- 충청북도 직제규칙 제9조, 제11조, 제12조, 제14조
-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

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.
- ③ 위원은 충청북도의 보건환경국장, 농정국장, 공업경제국장, 건설교통국장, 청주지방검찰청경제담당검사, 충북지방경찰청수사과장과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단체의 장, 교수, 언론인, 지방의회의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5조 제2항중 “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” 을 “위원장이 지명한” 으로 하고

제9조중 “부지사” 를 “공업경제국장” 으로 하며, 제10조중 “지역경제과장” 을
“경제과장” 으로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규정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
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.